

# 춘천우두지구 B-2블록 공공분양

## 「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」 배정 안내

### I 공급개요 및 일정

□ 위 치 :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85

□ 공급규모

유형	형별	세대수	세대별 주택 면적		비고
			전용(㎡)	공급(㎡)	
공공분양	74A	118	74	100	30평형
	74B	118	74	100	
	84A	526	84	112	34평형
	84B	217	84	112	
합 계		979			

※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며, 자세한 면적 규모는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

□ 공급일정 및 가격조건

공급일정 및 가격은 현재 미정이며,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.

□ 배정내역

구분 (계)	기관추천 특별공급													국가 유공 자
	장애 인	북한 이탈 주민	지자체 철거민/도시활 력증진 개발, 재생사업관련 토지또는건축물 소유자	장기 복무 제대 군인	10년 이상 복무 군인	중소 기업 근로 자	우수 기능 인	우수 선수	공무 원	의사 상자	납부 파해 자	다문 화가 족	체육 유공 자	
74A (15)	4	1	4											6
74B (16)	4	1	4			1								6
84A (79)	21	6	15	1	1	2	1	1	1	1	1	1	1	26
84B (37)	10	2	6	1	1	1			1	1	1	1	1	11
<b>계</b> (147)	<b>39</b>	<b>10</b>	<b>29</b>	<b>2</b>	<b>2</b>	<b>4</b>	<b>1</b>	<b>1</b>	<b>2</b>	<b>2</b>	<b>2</b>	<b>2</b>	<b>2</b>	<b>49</b>

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, 45조 및 판매보상기획처-774(2018.02.23)호에 의거 함

※ 배정기준 : 총 건설량의 10% 이내(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5% 별도 배정)

## II

# 신청자격

□ 추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(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)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/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)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)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

- (당첨예정자)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'당첨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'당첨자'가 되는 분
- (예비대상자)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'예비자'로 선정·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'당첨자'가 될 수 있는 분

### 【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】

추천대상자	입주자저축 구비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지자체 철거민,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필요없음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복무군인, 중소기업근로자, 우수기능인, 우수선수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대한민국체육유공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</li> </ul>

## □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

[무주택세대구성원] 전원(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)이 다음 [주택 및 분양권등]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

### [무주택세대구성원]

-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(이하 '주택공급신청자'라 함)
-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-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
### [주택 및 분양권등]

-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- 나목에 따른 지위(이하 "분양권등"이라 한다)를 승계취득(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
※ 「민법」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,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.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.

※ "혼인으로 구성된 세대"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.

### III

## 유의사항

-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강원도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)에 거주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.
-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(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)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.
-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,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.
-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(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)에 LH 청약센터(apply.lh.or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불가]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'10.2.23)이전에 “3자녀 우선공급” 및 “노부모부양 우선공급”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)
-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추후 공고일 이후 분양팜플릿 및 견본세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[분양팜플릿은 공고일 이후 분양홍보관에서 배포하며, 사이버 견본주택은 추후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하며, 인터넷 주소는 공고문에 기재예정]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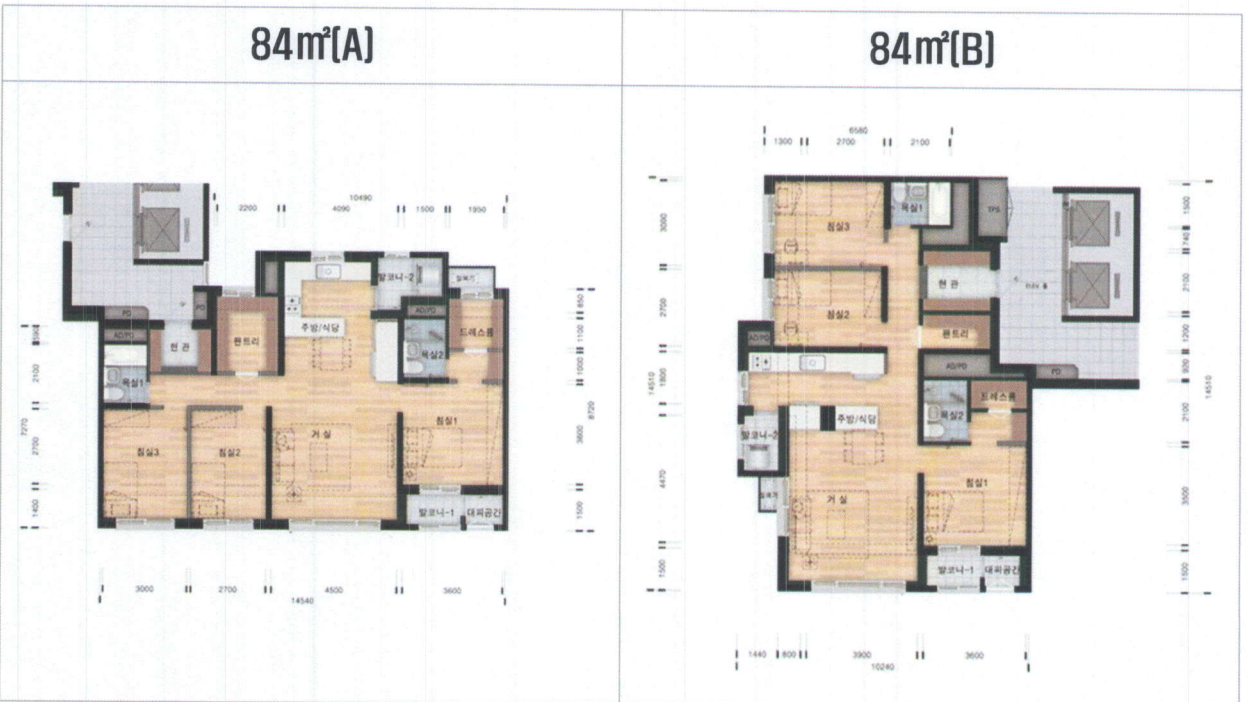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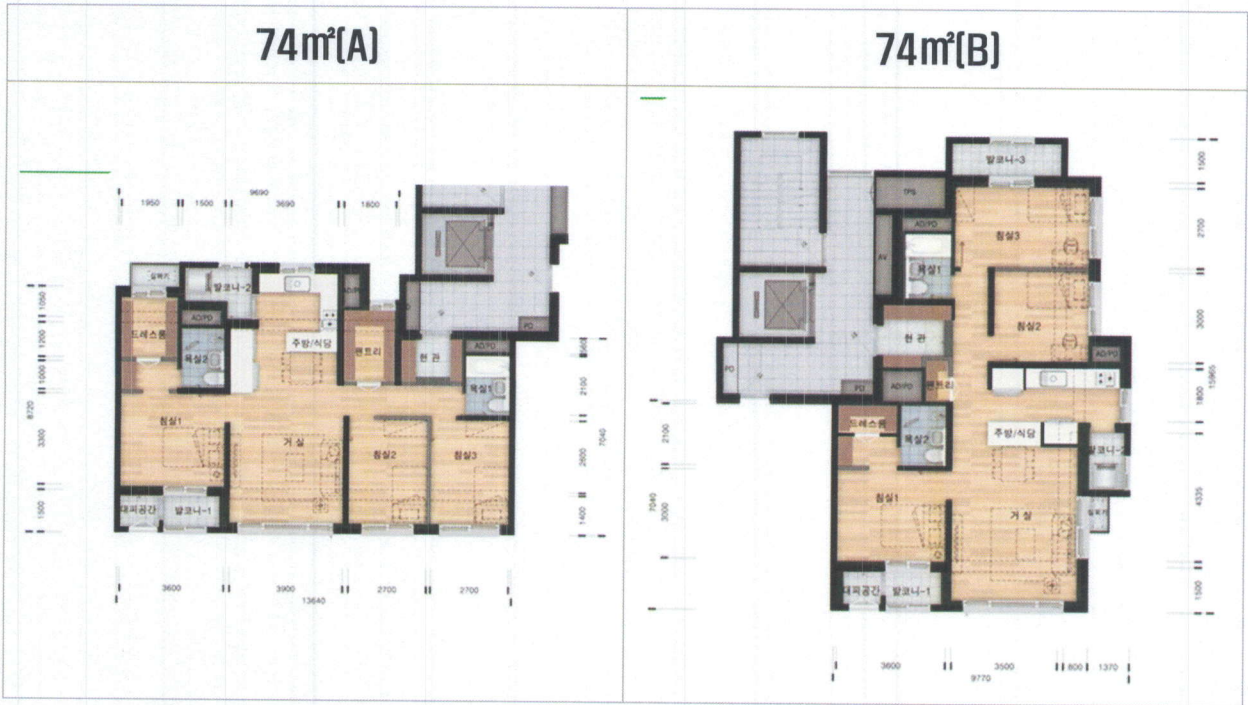
## IV

### 당첨자 선정 방법
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·층별·향별·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. [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]
-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(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 포함)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,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%(투기과열지구는 80%이상)범위에서 '특별공급 예비입주자' 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
V

타입별 평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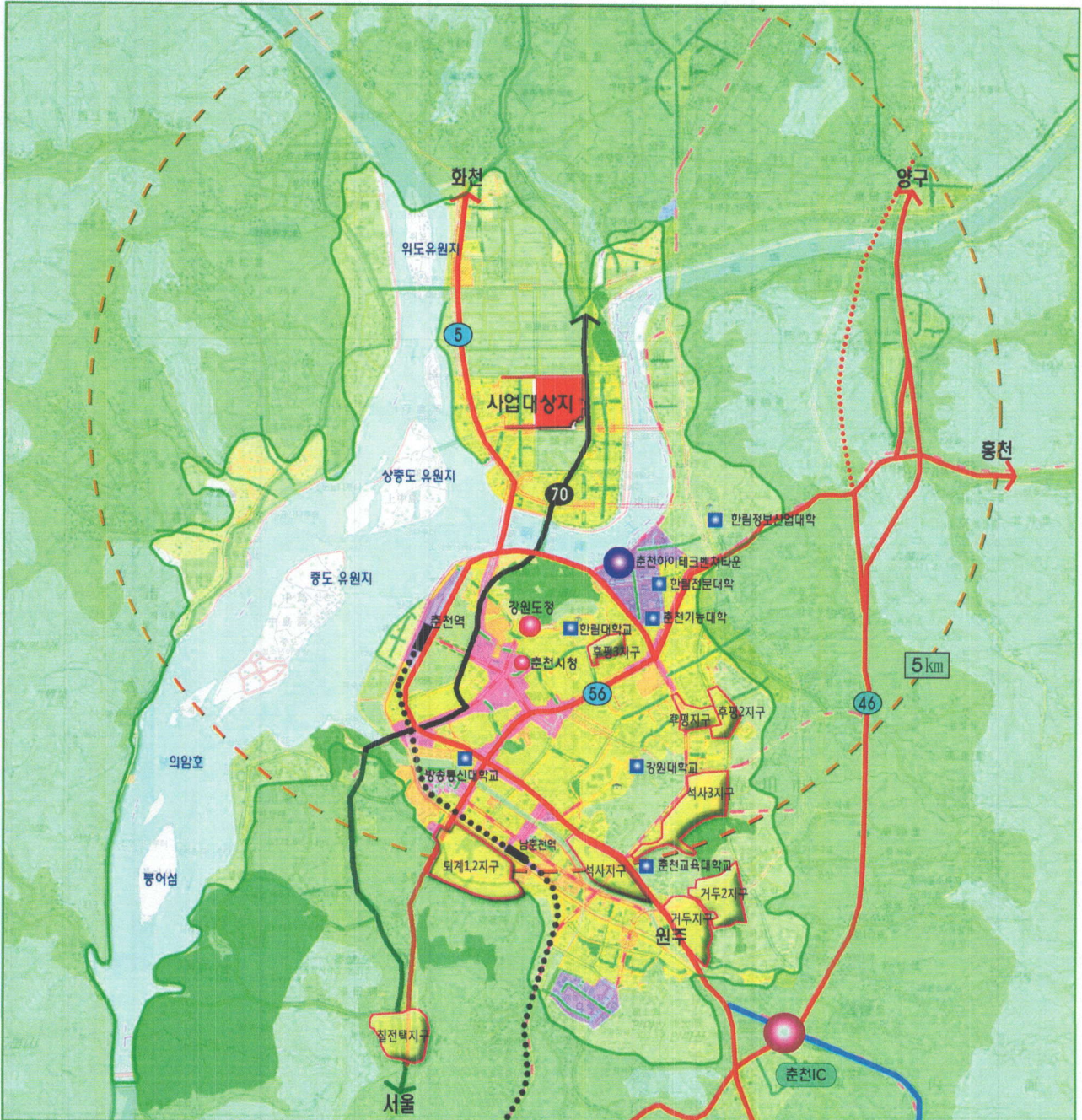


※ 위 평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, 정확한 평면도는 분양팜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람

VI

사업지구 위치도 · 토지이용계획도 · 홍보관 약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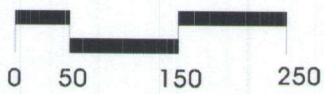
□ 위치도



□ 토지이용계획도



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 
개발계획(변경) 평면도



- |        |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
| 단독주택   | 공공공지    |
| 공동주택   | 학교(초,유) |
| 일반상업용지 | 종교용지    |
| 근린생활시설 | 주차장     |
| 공원     | 도로      |
| 완충녹지   | 보행자도로   |
| 연결녹지   | 지구계     |
| 경관녹지   |         |

□ 분양홍보관 위치도



- 홍보관 주소 :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84번지  
[홍보관과 건본세대 사이 거리는 100여미터 가량 떨어져 있음]